

제23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직장 내 괴롭힘
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4년 7 월 3 일

여 수 시 장 서경민



여수시 조례 제2097호

붙임 여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여수시 조례 제2097호

여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여수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와 소속기관”을 “「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른 본청, 직속기관, 사업소, 출장소, 읍·면·동”으로 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시에 근무하는 공무원”을 “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(공무원, 공무원직, 청원경찰, 기간제근로자)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규칙으로 정한다”을 “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.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"직장"이란 <u>여수시(이하 "시"라 한다)와 소속기관</u>을 말한다.</p> <p>3. "직원"이란 <u>시에 근무하는 공무원</u>을 말한다.</p> <p>제10조(실태조사) ① (생 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,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<u>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 「<u>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</u>」에 따른 본청, <u>직속기관, 사업소, 출장소, 읍·면·동</u>-----.</p> <p>3. ----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 (공무원, 공무원직, 청원경찰, 기간제 근로자)-----.</p> <p>제10조(실태조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<u>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.</u></p>